

현행안	개정안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1 장 총 칙</p> <p>【201】제1조(목적) 미주자치연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미주자치연회의 기본 조직을 밝히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장 교 회</p> <p>【202】제2조(교회의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p> <p>【203】제3조(교회의 직무) 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②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 ③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④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⑤ 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 <p>【204】제4조(교회의 설립 등) 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 교단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제 1 절 개체교회</p> <p>【205】제5조(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1】제1조(미주자치연회 자치법)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칭한다)의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되 연회에서 자치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따른다. <신설></p>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현행></p> <p>제 1 장 총 칙 <현행></p> <p>【201】제1조(목적) 미주자치연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미주자치연회의 기본 조직을 밝히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204】제4조(교회의 설립 등) 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 교단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p> <p>제 1 절 개체교회 <현행></p> <p>【205】제5조(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6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p>	<p>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6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현행></p>
<p>②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 설립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206】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p>	<p><삭제></p>
<p>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2/3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p>	<p><삭제></p>
<p>② 개체교회가 제1항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분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의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207】제7조(개체교회의 폐쇄)</p>	<p><삭제></p>

<p>① 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해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되 부동산의 경우는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하 미주유지재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p>	<p><삭제></p>
<p>②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체교회 폐쇄를 의결하면 지방회 감리사는 연회에 보고한다.</p>	<p><삭제></p>
<p>③ 제1항의 진행이 어려울 시 감리사는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에 보고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를 거쳐 폐쇄한다.</p>	<p><삭제></p>
<p>【208】제8조(개체교회 교단탈퇴 및 처리) <개정></p>	<p>【208】제8조(개체교회 교단탈퇴 및 처리) <현행></p>
<p>① 교단탈퇴 결의는 정기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재적회원이라 함은 전년도 정기당회의 입교인 총수를 말한다. 다만,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처리는 구역회에서 한다. <개정></p>	<p>① 교단탈퇴 결의는 정기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재적회원이라 함은 전년도 정기당회의 입교인 총수를 말한다. 다만,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처리는 구역회에서 한다. <현행></p>
<p>② 교단탈퇴와 그와 관련된 동산과 부동산 처리에 관한 정기구역회는 감리사가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미주유지재단에 동산 및 부동산의 위임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교단탈퇴와 그와 관련된 동산과 부동산 처리에 관한 정기구역회는 감리사가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미주유지재단에 동산 및 부동산의 위임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p>
<p>③ 부동산 포기 문서는 변호사가 작성하여 공증을 마쳐야 한다. <신설></p>	<p>③ 부동산 포기 문서는 변호사가 작성하여 공증을 마쳐야 한다. <현행></p>
<p>④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은 미주유지재단에 편입된다. <개정></p>	<p>④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은 미주유지재단에 편입된다. <현행></p>
<p>⑤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당시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권으로 출교를 명할 수 있다. <신설></p>	<p>⑤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당시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권으로 출교를 명할 수 있다. <현행></p>
<p>⑥ 교단탈퇴를 반대한 교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감독이 감리사와 논의하여 후임자를 파송한다.<개정></p>	<p>⑥ 교단탈퇴를 반대한 교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감독이 감리사와 논의하여 후임자를 파송한다. <현행></p>
<p>【209】제9조(개인의 교단 탈퇴 및 처리) <신설></p>	<p>【209】제9조(개인의 교단 탈퇴 및 처리) <현행></p>
<p>① 교역자의 교단탈퇴 시에는 감독 직권으로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를 명할 수 있다. <신설></p>	<p>① 교역자의 교단탈퇴 시에는 감독 직권으로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를 명할 수 있다. <현행></p>
<p>② 장로의 교단탈퇴 시에는 해당지방 감리사가 감독에게 보고 후 감리사 직권으로 장로직을 면직하고 출교를 명할 수 있다. <신설></p>	<p>② 장로의 교단탈퇴 시에는 해당지방 감리사가 감독에게 보고 후 감리사 직권으로 장로직을 면직하고 출교를 명할 수 있다. <현행></p>
<p>③ 권사 및 집사의 교단탈퇴 시에는 담임목사가 감리사에게 보고 후 담임목사가 직권으로 임원직을 면직하고 출</p>	<p>③ 권사 및 집사의 교단탈퇴 시에는 담임목사가 감리사에게 보고 후 담임목사가 직권으로 임원직을 면직하고 출</p>

교를 명할 수 있다. <신설>

④ 교단 탈퇴 후 복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의회의 장이 복권시킬 수 있다. <신설>

제 2 절 교 인

【210】제10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원입인 :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 ② 세례아동 :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 ③ 세례인 :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 ④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배서(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211】제11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 ② 세례를 받는다.
-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212】제12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 ① 공중예배 :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교를 명할 수 있다. <현행>

④ 교단 탈퇴 후 복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의회의 장이 복권시킬 수 있다. <현행>

<제2절~제6절까지 전체 삭제>

그 순서는 예배서(예문)에서 정한다.

② 수요일예배 : 수요일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③ 속회 : 속회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또는 정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④ 기도회 : 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⑤ 가정예배 :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⑥ 사경회 : 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⑦ 부흥회 : 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애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213】제13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 ④ 자치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신설>
-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⑩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214】제14조(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 ②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 ③ 교인은 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신설>

제 3 절 집 사

【215】제15조(집사의 자격) 개체교회는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 ①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자치법을 공부한 이 <신설>
- ③ 연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신설>

【216】제16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15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들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17】제17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제 4 절 권 사

【218】제18조(권사)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219】제19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권사는 가급적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신설>
- ②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220】제20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자치법을 공부한 이 <신설>
-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 ④ 연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신설>
-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 ⑥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권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1】제21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제20조(권사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들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 ③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222】제22조(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제 5 절 장 로

【223】제23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

로를 두며 장로는 기급적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24】제24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인 이
-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 ③ 개체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 받아 신천장로 고시 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신설>

【225】제25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5년 이내에 수료한 이
- ②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신설>

【226】제26조(장로의 안수집례) 제25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의 자격을 취득한 이의 안수는 지방회에서 담임목사와 본인이 원하는 목사 또는 장로의 보좌로 감리사가 집례한다.

【227】제27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 ⑤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 ⑦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

무를 대행할 수 있다.

【228】제28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자치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신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장로 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229】제29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다만,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할 수 없다. <신설>

② 담임자가 정기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 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 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지방회가 달한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장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보할 수 있다. <신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회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 지방회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 연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소지하고 이명해 온 장로는 미주자치연회의 입교인이 된 후 6개월 이상 자치법을 공부하고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장로증서를 받은 후 자치법에 준하여 파송한다. <신설>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다만, 복권될 경우 상실 당시의 연급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30】제30조(장로의 은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년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231】제31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232】제32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회 실행부 위원회가 인준한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신설>

③ 연회가 인준한 신학원에서 신학교육 과정을 졸업한 이 <신설>

④ 장애인 중 연회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신설>

【233】제33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234】제34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235】제35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는 감리회에 입교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 ①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신설>
- ②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신설>

【236】제36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237】제37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개체교회 교인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8】제38조(기관 파송 전도사 및 수련선교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신설>

- ① 기관 파송 전도사는 미군군목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은 전도사를 말하며,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신설>
- ② 수련선교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 <신설>
- ③ 미군군목후보생은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현행>

【238】제38조(기관 파송 전도사 및 수련선교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

- ① 기관 파송 전도사는 미군군목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은 전도사를 말하며,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현행>
- ② 수련선교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 <현행>
- ③ 미군군목후보생은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

<p>【244】제44조(교역자 필수과목) 교역자 필수과목은 감리 교회사, 자치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 학기) 6과목으로 하며, 미주자치연회에서 서리로 파송을 받고자 하는 이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의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교역자필수과목을 이수한 이는 자치법만 이수한다. <신설></p>	<p>【244】제44조(교역자 필수과목) 교역자 필수과목은 감리 교회사, <u>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u>, 자치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 학기) 6과목으로 하며, 미주자치연회에서 서리로 파송을 받고자 하는 이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의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교역자필수과목을 이수한 이는 자치법만 이수한다. <개정></p>
<p>【245】제45조(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미주자치연회 교역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다. <신설></p>	<p><삭제></p>
<p>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p>	<p><삭제></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교역자로 파송될 수 없다.</p>	<p><삭제></p>
<p>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p>	<p><삭제></p>
<p>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 보증을 한 이</p>	<p><삭제></p>
<p>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p>	<p><삭제></p>
<p>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p>	<p><삭제></p>
<p>【246】제46조(담임자의 파송)</p>	<p><삭제></p>
<p>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p>	<p><삭제></p>
<p>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신설></p>	<p><삭제></p>
<p>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신설></p>	<p><삭제></p>
<p>④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p>	<p><삭제></p>

<p>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 파송 한다. 다만,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p>	
<p>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위 제1항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p>	<삭제>
<p>【247】제4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선교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신설></p>	<삭제>
<p>【248】제4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삭제>
<p>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p>	<삭제>
<p>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행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하지 못한다. 감독으로부터 본처목사(Local Pastor)로 임명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만 목사로 호칭하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할 수 있다. 본처목사는 담임자에 한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신설></p>	<삭제>
<p>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p>	<삭제>
<p>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p>	<삭제>
<p>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p>	<삭제>
<p>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p>	<삭제>
<p>6. 감리회 신앙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감리회 교재 사용을 권장한다.</p>	<삭제>
<p>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p>	<삭제>
<p>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 시 자치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p>	<삭제>
<p>2. 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신설></p>	<삭제>

<p>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 자치법을 가르친다. <신설></p>	<p><삭제></p>
<p>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p>	<p><삭제></p>
<p>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 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p>	<p><삭제></p>
<p>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p>	<p><삭제></p>
<p>7. 지방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p>	<p><삭제></p>
<p>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지방, 연회,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적극 협력한다.</p>	<p><삭제></p>
<p>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삭제></p>
<p>10. 담임자 이임 시 개체교회의 사무와 행정 재정 등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p>	<p><삭제></p>
<p>11. 담임자는 교회 재산 변동사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p>	<p><삭제></p>
<p>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삭제></p>
<p>제 9 절 부담임자</p>	<p><삭제></p>
<p>【249】제49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p>	<p><삭제></p>
<p>①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p>	<p><삭제></p>
<p>② 제1항에 의한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가 소집할 수 있다.</p>	<p><삭제></p>
<p>【250】제5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p>	<p><삭제></p>
<p>【251】제5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 교육 행</p>	<p><삭제></p>

<p>정 전도 기획 음악 사회복지 미디어 등의 담당으로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담임자 유고 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p> <p>【252】제5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개정></p> <p>① 담임자가 별세 은퇴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신설></p> <p>② 부담임자 혹은 부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는 개체교회는 일반회계 소계 7만불 이상일 때 1명을 파송할 수 있으며 추가 될 경우에는 각 1명당 일반회계 결산 3만불 이상 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미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개체교회의 경우 해당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p> <p>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p> <p>제 10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p> <p>【253】제53조(부서의 종류)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p> <p>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예배부 ⑤ 문화부 ⑥ 재무부 ⑦ 관리부</p> <p>【254】제54조(선교부의 조직) 선교부의 조직은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선교부를 조직한다.</p> <p>② 선교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p> <p>③ 선교부는 속회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다.</p> <p>④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p>	<p><삭제></p> <p>【252】제5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현행></p> <p><삭제></p> <p>② 부담임자 혹은 부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는 개체교회는 일반회계 소계 7만불 이상일 때 1명을 파송할 수 있으며 추가 될 경우에는 각 1명당 일반회계 결산 3만불 이상 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미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개체교회의 경우 해당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현행></p> <p><삭제></p> <p><253단 전체 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	--

<p>【255】제55조(선교부의 직무) 선교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p>	<p><삭제></p>
<p>② 담임자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p>	<p><삭제></p>
<p>③ 담임자의 지도하에 속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회 부흥을 도모한다.</p>	<p><삭제></p>
<p>【256】제56조(속회의 조직과 직무) 교인들의 신앙훈련과 친교 및 교회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①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 및 중보기도를 드린다.</p>	<p><삭제></p>
<p>③ 속회는 속장의 주선 하에 교인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p>	<p><삭제></p>
<p>④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p>	<p><삭제></p>
<p>⑤ 속회는 교회사업이나 속회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p>	<p><삭제></p>
<p>⑥ 속회는 속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개선을 위해 힘쓴다.</p>	<p><삭제></p>
<p>【257】제57조(속장의 자격) 속장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임원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이</p>	<p><삭제></p>
<p>② 신앙이 돈독하고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p>	<p><삭제></p>
<p>【258】제58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제55조(속장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p>	<p><삭제></p>
<p>【259】제59조(속장의 직무) 속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헌금 수합, 속회일지 작성 및 제출 등 속회의 업무를 담당한다.</p>	<p><삭제></p>
<p>②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삭제></p>
<p>③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현황을 담임자에게 보고한다.</p>	<p><삭제></p>

<p>④ 속장은 속회에서 수합된 속회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p>	<p><삭제></p>
<p>⑤ 속장은 담당 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p>	<p><삭제></p>
<p>【260】제60조(속회 인도자) 담임자는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할 속회 인도자를 임명한다.</p>	<p><삭제></p>
<p>【261】제61조(교육부의 조직) 교육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교육부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교육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p>	<p><삭제> <삭제></p>
<p>【262】제62조(교육부의 직무) 교육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교육과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p>	<p><삭제></p>
<p>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인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p>	<p><삭제></p>
<p>③ 교회학교의 조직 교육정책 교육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회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p>	<p><삭제></p>
<p>【263】제63조(사회봉사부의 조직) 사회봉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사회봉사부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사회봉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p>	<p><삭제></p>
<p>【264】제64조(사회봉사부의 직무) 사회봉사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내외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p>	<p><삭제></p>
<p>【265】제65조(예배부의 조직) 예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p><삭제></p>
<p>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예배부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예배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p>	<p><삭제></p>

<p>【266】제66조(예배부의 직무) 예배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p>	<p><삭제></p>
<p>②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p>	<p><삭제></p>
<p>③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p>	<p><삭제></p>
<p>【267】제67조(문화부의 조직) 문화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문화부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문화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p>	<p><삭제></p>
<p>【268】제68조(문화부의 직무)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음악, 기독교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친교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p>	<p><삭제></p>
<p>【269】제69조(재무부의 조직) 재무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재무부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재무부는 부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내지 2명을 선출한다.</p>	<p><삭제></p>
<p>1. 재무부장은 재무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p>	<p><삭제></p>
<p>2. 서기는 재무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 때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삭제></p>
<p>3. 회계는 부장의 결재 하에 헌금을 수합하여 예치하며,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다.</p>	<p><삭제></p>
<p>【270】제70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p>	<p><삭제></p>
<p>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헌금을 청한다.</p>	<p><삭제></p>

<p>③ 교회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한다.</p>	<p><삭제></p>
<p>④ 전임 교역자와 유급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p>	<p><삭제></p>
<p>⑤ 교역자의 주택을 마련한다.</p>	<p><삭제></p>
<p>⑥ 교역자의 퇴직금을 수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p>	<p><삭제></p>
<p>⑦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의 해당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p>	<p><삭제></p>
<p>⑧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기 내에 납부한다.</p>	<p><삭제></p>
<p>⑨ 임원회에 수입 지출에 관한 재정현황을 보고하고, 당회와 구역회에 연간 결산을 보고한다.</p>	<p><삭제></p>
<p>【271】제71조(관리부의 조직) 관리부의 조직은 다음 각항과 같다.</p>	<p><삭제></p>
<p>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관리부를 조직한다.</p>	<p><삭제></p>
<p>② 관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p>	<p><삭제></p>
<p>③ 서기는 관리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 때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원의 명부에는 부원의 성명과 주소, 부원으로 피선된 연, 월, 일 그리고 퇴임한 연, 월, 일을 기입하여야 한다.</p>	<p><삭제> <삭제></p>
<p>【272】제72조(관리부의 직무) 관리부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특히 관리부는 교회 재산관리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직무수행은 정확한 문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p>	<p><삭제></p>
<p>①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목록에는 부동산, 동산의 구분(부동산의 경우 소재, 지목, 지적 포함), 재산취득 경위,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주유지재단에 가입된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p>	<p><삭제></p>
<p>②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미주유지재단에 가입한다. <신설></p>	<p><삭제></p>
<p>③ 교회가 소유하거나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을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 보존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p>	<p><삭제></p>

<p>④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 그리고 교회비품을 수리하고 보존한다.</p> <p>⑤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미주유지재단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신설></p> <p>⑥ 교회의 비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⑦ 관리부장은 교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상태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p> <p>⑧ 교회에서 보존 관리 중에 있는 건물과 비품 중 특별히 관리해야 할 건물과 비품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본부와 미주유지재단에 각각 보고한다. <신설></p> <p>【273】제73조(감사의 선출)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위해 감사 2명을 당회에서 선출한다.</p> <p>【274】제74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 중에서 피감 대상이 아닌 이어야 한다.</p> <p>【275】제7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p> <p>【276】제76조(자치기관 설치) 개체교회 안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여성교회, 남선교회 등의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담임자의 지도하에 선교, 봉사, 친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p> <p>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p> <p>【277】제77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선교회원으로 구분한다. <신설></p> <p>【278】제78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3 장 교역자 <현행> 제 1 절 연회 회원 <현행></p> <p>【277】제77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선교회원으로 구분한다. <현행></p> <p>【278】제78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p>
---	--

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총회가 인준한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대학원(M.Div. 또는 MAT),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신설>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나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④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⑤ 감리회 4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연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⑥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신설>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 개체교회 또는 미주자치연회 인정 기관 수련목회자 <신설>
3. 수련선교사(연회실행부위원회 선교사 인준자)

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현행>

① 총회가 인준한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대학원(M.Div. 또는 MAT),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현행>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나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

④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

⑤ 감리회 4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연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미주자치연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

⑥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현행>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현행>

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현행>
2. 개체교회 또는 미주자치연회 인정 기관 수련목회자 <현행>
3. 수련선교사(연회실행부위원회 선교사 인준자)

<p><신설></p> <p>4. 미군군목후보생 <신설></p> <p>⑧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4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에 감리회 목회실습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는 학기말 평가 후 연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p> <p>⑨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 과정법에 따라 2년간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279】제79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p> <p>②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p> <p>③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p> <p>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p> <p>【280】제80조(연회 회원의 생활비) 연회 회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 회원의 생활비는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p> <p>② 구역 서리 담임자와 수련목회자와 기관 파송 목회자는 소속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p> <p>【281】제81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군군목후보,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련목회자의 경우에는 준회원 과정 중에 반드시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p> <p>【282】제82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p> <p>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미주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신설></p> <p>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신설></p>	<p><현행></p> <p>4. 미군군목후보생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281】제81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군군목후보,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련목회자의 경우에는 준회원 과정 중에 반드시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	--

⑤ 정회원으로 퇴회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삭제>
1.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삭제>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삭제>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삭제>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삭제>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 보증을 한 이	<삭제>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삭제>
⑦ 군목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이는 신학대학원(Th.M. MAT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	<삭제>
⑧ 협동목사는 10년 이상 흠 없이 사역하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신학석사 혹은 목회아카데미 포함)을 이수한 이로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으로 정회원에 허입한다.	<삭제>
【283】제83조(연회 정회원의 안식년) 연회 정회원의 안식년은 정회원에 허입한 해부터 기산하여 매 7년 되는 해에 교회 형편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284】제84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삭제>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삭제>
③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 외의 연수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85】제85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의 자격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신설>	<삭제>
【286】제86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삭제>
② 협동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삭제>

<p>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保有한다.</p> <p>④ 협동회원이 된 이는 협동회원으로 가입된 해부터 기산하여 은급혜택을 받는다.</p> <p>【287】제87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협동회원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허입한다. <신설></p> <p>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다만, 농아인 목회자는 제외)</p> <p>③ 협동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p> <p>【288】제88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로 안수한다.</p> <p>【289】제89조(연회 선교회원의 자격) 연회 선교회원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원주민(외국인) 중에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89단 전체 신설></p> <p>①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치법의 절차에 따라서 연회에 허입한 이</p> <p>② 원주민(외국인)교회를 담임하여 5년 이상 목회를 한 이</p> <p>③ 지방회에서 5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p> <p>④ 건전한 교파에서 목회하며, 목사안수를 받은 이</p> <p>⑤ 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 수 30명 이상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p> <p>【290】제90조(연회 선교회원의 직무) 연회 선교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290단 전체 신설></p> <p>① 원주민(외국인)으로서 선교회원이 된 이는 원주민(외국인) 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p> <p>② 선교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p> <p>③ 선교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保有한다.</p> <p>④ 선교회원은 본부와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총회대표가 될 수 없고 은급혜택을 받지 않는다.</p> <p>【291】제91조(선교회원의 허입과 파송) 선교회원의 허입</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289】제89조(연회 선교회원의 자격) 연회 선교회원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원주민(외국인) 중에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p> <p>①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치법의 절차에 따라서 연회에 허입한 이 <현행></p> <p>② 원주민(외국인)교회를 담임하여 5년 이상 목회를 한 이 <현행></p> <p>③ 지방회에서 5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현행></p> <p>④ 건전한 교파에서 목회하며, 목사안수를 받은 이 <현행></p> <p>⑤ 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 수 30명 이상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 <현행></p> <p>【290】제90조(연회 선교회원의 직무) 연회 선교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① 원주민(외국인)으로서 선교회원이 된 이는 원주민(외국인) 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현행></p> <p>② 선교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현행></p> <p>③ 선교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保有한다.<현행></p> <p>④ 선교회원은 본부와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총회대표가 될수 없고 은급혜택을 받지 않는다.<현행></p> <p>【291】제91조(선교회원의 허입과 파송) 선교회원의 허입</p>
---	--

<p>과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91단 전체 신설></p> <p>① 선교회원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허입한다.</p> <p>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선교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거나 또 다른 원주민(외국인) 교회로도 파송할 수 있다.</p> <p>③ 선교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p> <p>【292】제92조(선교회원의 목사안수)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선교회원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목사로 안수한다. <신설></p> <p>【293】제93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정회원으로서는 기관 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p> <p>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회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p> <p>③ 파송기관은 기관목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p> <p>④ 파송 받는 기관에서 연봉 일만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p> <p>⑤ 연회에서 은퇴한 교역자는 연회의 모든 인준기관에서도 은퇴하여야 한다. <현행></p> <p>【294】제94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p> <p>① 교역자가 3개월 이상 파송 받은 개체교회 혹은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의 승인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휴직 처리한다. <신설></p> <p>② 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감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년, 석·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유학기간 총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p>	<p>과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① 선교회원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허입한다.<현행></p> <p>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선교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거나 또 다른 원주민(외국인) 교회로도 파송할 수 있다. <현행></p> <p>③ 선교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 <현행></p> <p>【292】제92조(선교회원의 목사안수)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선교회원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목사로 안수한다. <현행></p> <p>【293】제93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③ 파송기관은 기관목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다. <현행></p> <p>④ 파송 받는 기관에서 연봉 일만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	--

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	
④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 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기간은 연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제>
【295】제95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교역자의 기관 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삭제>
1. 교역자는 총회(감리회 본부)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다.	<삭제>
2. 제1호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 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3. 제2호에 의한 파송청원을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	<삭제>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삭제>
③ 제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 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취소된다.	<삭제>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라 파송할 수 있다.	<삭제>
⑤ 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감독의 허락 없이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삭제>
⑥ 선교사는 연 2회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삭제>
【296】제96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교역자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의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분은 감리회 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1.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2.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삭제>
3.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삭제>
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기록	<삭제>
②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삭제>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	<삭제>
【297】제97조(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교역자는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급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교역자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한다. 다만, 개체교회나 각 기관은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298】제98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삭제>
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삭제>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③ 목회 중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하여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은 이(대학병원진단서 첨부)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공상 은퇴할 수 있다.	<삭제>
④ 연회 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삭제>
⑤ 은퇴한 교역자는 원로목사라 칭하며,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삭제>
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은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격으로 결의하는 경우 은퇴를 거부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부적격 이유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동 퇴회된다. <신설>	<삭제>
【299】제99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삭제>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자치법의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삭제>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삭제>
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삭제>

<p>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⑤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p> <p>⑥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p> <p>⑦ 은퇴한 목사가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미주자치연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면 감독이 이를 은급재단이사회에 통보한다. <신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300】제100조(타교단, 타교파로부터 이명) 타교단, 타교파로부터 이명해 오는 목회자의 연급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회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p>	<p>【300】제100조(타교단, 타교파로부터 이명) 타교단, 타교파로부터 이명해 오는 목회자의 연급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회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현행></p>
<p>【301】제101조(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 <개정></p> <p>① 기관목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p> <p>② 타교파 혹은 타 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며, 미주자치연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5년 이상 재직한 이어야 하며 소속지방의 감리사와 소속교회의 담임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p> <p>③ 매년 지방회와 연회에 행정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금의 액수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p> <p>④ 매년 지방회와 연회에 참석하여 사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와 연회에서 발언권만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진급은 정지된다. <개정></p>	<p>【301】제101조(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 <현행></p> <p>① 기관목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행></p> <p>② 타교파 혹은 타 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며, 미주자치연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5년 이상 재직한 이어야 하며 소속지방의 감리사와 소속교회의 담임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행></p> <p>③ 매년 지방회와 연회에 행정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금의 액수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현행></p> <p>④ 매년 지방회와 연회에 참석하여 사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와 연회에서 발언권만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진급은 정지된다. <현행></p>
<p>【302】제102조(연회 선교사의 파송) <개정></p> <p>① 연회 선교사의 파송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준한다. <개정></p> <p>② 연회 선교사 후보자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 부설 선교훈련원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격, 과정 및 진급은 연회과정고시위원회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룬다. <개정></p> <p>③ 선교사는 소속교회와 연봉 일만 이천 달러(US\$) 이상의 후원약정서가 있어야 하고 연회에 의무적으로 선교보고를 하며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현행></p> <p>④ 연회 평신도 선교사(전문직 선교사)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 부설 선교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연회 인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개</p>	<p>【302】제102조(연회 선교사의 파송) <현행></p> <p>① 연회 선교사의 파송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준한다. <현행></p> <p>② 연회 선교사 후보자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 부설 선교훈련원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격, 과정 및 진급은 연회과정고시위원회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룬다. <현행></p> <p>③ 선교사는 소속교회와 연봉 일만 이천 달러(US\$) 이상의 후원약정서가 있어야 하고 연회에 의무적으로 선교보고를 하며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현행></p> <p>④ 연회 평신도 선교사(전문직 선교사)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 부설 선교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연회 인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현</p>

<p>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p>	
<p>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p>	<삭제>
<p>⑧ 감리사는 지방회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p>	<삭제>
<p>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p>	<삭제>
<p>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삭제>
<p>⑪ 감리사는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p>	<삭제>
<p>⑫ 감리사는 지방회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p>	<삭제>
<p>⑬ 감리사는 지방회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p>	<삭제>
<p>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나 장로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p>	<삭제>
<p>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신설></p>	<삭제>
<p>【308】제108조(지방회 부서 조직) 지방회의 부흥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그 업무를 분담 집행하게 한다.</p>	<삭제>
<p>① 선교부</p>	<삭제>
<p>② 교육부</p>	<삭제>
<p>③ 사회평신도부</p>	<삭제>
<p>【309】제109조(부서별 총무) 지방회는 각 부서별로 사</p>	<삭제>

<p>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겸임할 수도 있다. <개정></p> <p>【310】 제110조(부서별 상임위원) 집행 부서별로 총무를 도와 해당 부서의 사업을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집행 부서별로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부서별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p> <p>【311】 제111조(선교부 총무) 선교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 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 본부의 선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p> <p>【312】 제112조(교육부 총무) 교육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 본부의 교육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회 안의 청년회와 개체교회 문화부를 지도 육성한다.</p> <p>【313】 제113조(사회평신도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평신도사업과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회 안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p> <p>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p> <p>【314】 제114조(감독과 연회 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연회 본부를 설치하고 감독이 관장한다.<개정></p> <p>【315】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정회원으로 만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미주자치연회에서 1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p> <p>②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 <현행></p> <p>【314】 제114조(감독과 연회 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연회 본부를 설치하고 감독이 관장한다.<현행></p> <p>【315】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현행></p> <p>① 정회원으로 만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미주자치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개정></p> <p>②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행></p>
--	--

<p>③ 연회의 표준정관(Bylaw)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주 정부에 등록하고 모든 부담금을 법에 따라 완납한 구역의 담임자여야 한다. <개정></p> <p>④ 감독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계속되는 4년 이상의 자립교회의 담임자여야 한다. 단 자립교회 기준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p> <p>⑤ 감독은 행정총회 직전 연회에서 선출하며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p> <p>⑥ 감독 당선자는 당연직 연회실행부위원이 된다. <개정></p> <p>⑦ 감독은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라 선출하고, 감독의 임기는 총회에서 취임식과 함께 시작된다. 다만, 국가재난, 자연재해, 신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출된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개정></p> <p>【316】제116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한다. 다만, 궐위 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② 감독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비롯한 어떠한 사유로든 궐위 되었을 때는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권자가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즉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을 보선한다. <개정></p> <p>③ 감독이 유고되었을 때는 2항의 방법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신설></p> <p>【317】제11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p> <p>① 감독은 미주자치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개정></p> <p>② 감독은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p>	<p>③ 연회의 표준정관(Bylaw)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주 정부에 등록하고 모든 부담금을 법에 따라 완납한 구역의 담임자여야 한다. <현행></p> <p>④ 감독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계속되는 4년 이상의 자립교회의 담임자여야 한다. 단 자립교회 기준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현행></p> <p>⑤ 감독은 행정총회 직전 연회에서 선출하며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p> <p>⑥ 감독 당선자는 당연직 연회실행부위원이 된다. <현행></p> <p>⑦ 감독은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라 선출하고, 감독의 임기는 총회에서 취임식과 함께 시작된다. 다만, 국가재난, 자연재해, 신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출된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현행></p> <p>【316】제116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①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한다. 다만, 궐위 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현행></p> <p>② 감독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비롯한 어떠한 사유로든 궐위 되었을 때는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권자가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즉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을 보선한다. <현행></p> <p>③ 감독이 유고되었을 때는 2항의 방법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현행></p> <p>【317】제11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	--

<p>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p> <p>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행한다.</p> <p>④ 감독은 연회 개회 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자치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p><신설></p> <p>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p> <p>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다만, 파송 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감독당선자와 협의하여 천거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 <개정></p> <p>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⑩ 감독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p> <p>⑪ 감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p> <p>⑫ 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0일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p> <p>⑬ 감독은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직권 상 이사가 된다. <신설></p> <p>⑭ 감독은 개체교회 재산의 미주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p> <p>⑮ 감독은 연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⑬ 감독은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직권 상 이사가 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	---

<p>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p> <p>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 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 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p> <p>⑰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p> <p>⑱ 감독은 지방회 내에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⑲ 감독은 교회 내 재산권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교회 및 재산권의 보호, 유지를 위한 행정조치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신설></p> <p>⑳ 감독은 교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시담임 목사(Interim Pastor)를 파송할 수 있다. 다만, 임시담 임목사는 임시담임목사로 파송되었던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될 수 없다. <신설></p> <p>㉑ 감독은 필요에 따라 본처 목사(Local Pastor)의 직 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p> <p>【318】제118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 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과 미주자치연 회 자치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 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설></p> <p>【319】제119조(연회 본부의 설치) 미주자치연회는 연회 의 행정을 총괄하는 연회 본부를 둔다. <개정></p> <p>① 연회 본부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회 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개정></p> <p>② 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현행></p> <p>【320】제120조(연회 본부의 조직) 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 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무급의 임원을 둔다. <개정></p> <p>① 감독 1인</p> <p>② 총무 1인</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⑲ 감독은 교회 내 재산권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교회 및 재산권의 보호, 유지를 위한 행정조치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319】제119조(연회 본부의 설치) 미주자치연회는 연회 의 행정을 총괄하는 연회 본부를 둔다. <현행></p> <p>① 연회 본부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회 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현행></p> <p>② 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현행></p> <p>【320】제120조(연회 본부의 조직) 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 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무급의 임원을 둔다. <현행></p> <p>① 감독 1인 <현행></p> <p>② 총무 1인 <현행></p>
--	---

<p>⑥ 간사 2인 이내 <개정></p> <p>【321】제121조(연회 총무) 연회 본부에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 행정사무를 담당할 총무 1인을 둔다. <신설></p> <p>【322】제122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10년 이상 미주자치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45세 이상이 된 이로 직무수행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개정></p> <p>【323】제123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p> <p>【324】제124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연회 총무가 유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후임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p> <p>【325】제125조(연회 총무의 임면) 연회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이 임면한다.<신설></p> <p>【326】제126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p> <p>① 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회 자체 사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p> <p>② 연회 총무는 감리회 본부와 소속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의 업무연락을 취하며 연회의 각 부 사업 및 행정 사무 일체를 직접 집행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분류 정리하여 보존한다.</p> <p>③ 연회 총무는 연회에서 책정한 수입지출 예산서에 따라 각 지방회에 배정한 부담금을 수납하여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며, 예산의 집행상황을 매월 연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신설></p> <p>④ 연회 총무는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의 교세를 포함한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회와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p> <p>⑤ 연회 총무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p> <p>【327】제127조(연회 간사) 연회 각 부 사업의 집행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p> <p>①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회 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p>	<p>⑥ 간사 2인 이내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325단~328단까지 삭제></p>
---	--

<p>②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임면한다.</p> <p>【328】제128조(연회의 재정)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개체교회에서 납입하는 부담금, 선교활동 보조금, 의연금, 그 밖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p> <p>부 칙 (2021. 1. 25)</p> <p>【3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330】제2조(경과조치) 연회표준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제30회 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다.</p>	<p>부 칙 (2021. 1. 25)</p> <p>【3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330】제2조(경과조치) 연회표준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32회 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다.<개정></p>
<p>제 4 편 의회법 제 1 장 총 칙</p> <p>【401】제1조(목적) 미주자치연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설></p> <p>【402】제2조(의회의 종류) 미주자치연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입법의회를 둔다. <신설></p> <p>【403】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회와 구역회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지방회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다. 각 의회에 속한 모든 위원회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다. <신설></p> <p>【404】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회의 각 위원회는 교역자와 평신도를 연회 참석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p> <p>② 여성 및 연하자 배려의 원칙에 대하여는 미주자치연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개정></p> <p>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p>	<p>제 4 편 의회법 <현행> 제 1 장 총 칙 <현행></p> <p>【401】제1조(목적) 미주자치연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행></p> <p>【402】제2조(의회의 종류) 미주자치연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를 둔다.<개정></p> <p>【403】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회와 구역회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지방회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다. 각 의회에 속한 모든 위원회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전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p>	<p><삭제></p>
<p>【405】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 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삭제></p>
<p>【406】제6조(의사규칙) 미주자치연회의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신설></p> <p>제 2 장 당 회</p> <p>제 1 절 당 회</p>	<p><삭제></p> <p>제 2 장 당 회 <현행></p> <p>제 1 절 당 회 <현행></p>
<p>【407】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p>	<p><삭제></p>
<p>【408】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p> <p>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 <p>② 등록된 입교인 6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p>	<p>【408】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행></p> <p><삭제></p> <p>② 등록된 입교인 6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p>
<p>【409】제9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p> <p>②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410】제10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p>	<p><삭제></p>
<p>【411】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p>	<p><삭제></p>
<p>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p> <p>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당회 정회 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412】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 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p>	<p><삭제></p>

서리담임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413】제13조(당회 의장의 직무) 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삭제>
【414】제14조(당회 서기 선출) 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삭제>
【415】제15조(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삭제>
②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삭제>
【416】제16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대로 피선거권이 있다.	<삭제>
【417】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인 이	<삭제>
②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삭제>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삭제>
【418】제18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의 수로 한다. 다만, 교회 분립과 통합, 교단탈퇴를 위한 당회는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으로 한다. <신설>	<삭제>
【419】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당회는 당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다만,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삭제>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삭제>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삭제>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삭제>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청장년선교회장, 청년회장을 인준한다.	<삭제>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삭제>

<p>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p>	<p><삭제></p>
<p>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p>	<p><삭제></p>
<p>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삭제></p>
<p>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p>	<p><삭제></p>
<p>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p>	<p><삭제></p>
<p>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 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p>	<p><삭제></p>
<p>【420】제20조(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420단 전체 삭제></p>
<p>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 ⑤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 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 ⑥ 담임자 신년도 계획안 보고 ⑦ 교회임원 선출 ⑧ 신천집사, 신천권사 증서 수여 ⑨ 그 밖의 사무처리 ⑩ 폐회</p>	
<p>【421】제21조(사고당회의 처리)</p>	<p><삭제></p>
<p>① 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 당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p>	<p><삭제></p>
<p>② 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p>	<p><삭제></p>
<p>제 2 절 임원회</p>	<p><삭제></p>
<p>【422】제22조(임원회)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를</p>	<p><삭제></p>

<p>둔다.</p> <p>【423】제23조(임원회의 조직)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p> <p>【424】제24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④ 그 밖에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p>제 3 절 기획위원회</p> <p>【425】제25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는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가 되며 담임목사는 기획위원회의 의장 및 재단이사장이 된다. <개정></p> <p>【426】제26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5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할 수도 있다. <개정></p> <p>【427】제27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결의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및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④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결의 ⑤ 재단이사회의 직무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신설> <p>제 3 장 구역회</p> <p>제 1 절 구역회</p> <p>【428】제28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p> <p>【429】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6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3 절 기획위원회 <현행></p> <p>【425】제25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는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가 되며 담임목사는 기획위원회의 의장 및 재단이사장이 된다. <현행></p> <p>【426】제26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5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할 수도 있다. <현행></p> <p>【427】제27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⑤ 재단이사회의 직무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현행></p> <p>제 3 장 구역회 <현행></p> <p>제 1 절 구역회 <현행></p> <p>【428】제28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현행></p> <p>【429】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6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p>
--	--

- 14. 관리부장
- 15. 남선교회 회장
- 16. 여선교회 회장
- 17. 청장년선교회 회장
- 18. 청년회 회장
- 19. 교회학교 교장
- 20. 당회 서기

- ⑤ 지방회 대표 선출
-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 ⑧ 감사보고
- ⑨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 ⑩ 신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 ⑪ 그 밖의 사무처리
- ⑫ 폐회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436】제36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437】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438】제38조(구역 인사위원회 의장)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39】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 서기)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40】제40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

<제2절 전체 삭제>

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④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 및 기관 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 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다만,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441】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이 조직과 행정법 제46조(담임자의 파송) 제4항에 따라 파송한다.
- ③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42】제42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다.	
⑤ 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삭제>
【446】제46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가 된다.	<삭제>
①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삭제>
② 감리사가 궐위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은 타 지방 감리사 혹은 정회원 목사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삭제>
【447】제47조(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 지방회는 서기 1인, 통계서기 1인을 선출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삭제>
① 지방회 서기는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지방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삭제>
② 지방회 통계서기는 지방회 통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삭제>
③ 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448】제48조(지방회 회계) 지방회는 임기 2년의 회계를 선출하여 지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회에 보고하게 하며, 지방회 수입,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삭제>
【449】제49조(지방회 감사) 지방회에 감사 2인을 둔다.	<삭제>
① 감사는 지방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② 감사는 지방회의 재정과 행정사무 전반(각 부 총무의 사업 포함)에 걸쳐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삭제>
③ 지방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보유한다.	<삭제>
【450】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삭제>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	<삭제>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삭제>

<p>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신설></p>	
<p>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신설></p>	<삭제>
<p>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신설></p>	<삭제>
<p>③ 각 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인사위원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실행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p>	<삭제>
<p>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미주유지재단에 편입(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p>	<삭제>
<p>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p>	<삭제>
<p>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8명과 재판위원 8명을 선출한다. <신설></p>	<삭제>
<p>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p>	<삭제>
<p>⑧ 지방회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미주유지재단 등록 여부를 조사한다. <신설></p>	<삭제>
<p>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p>	<삭제>
<p>⑩ 지방회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p>	<삭제>
<p>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연회에 심사와 재판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p>	<삭제>
<p>⑫ 지방회가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p>	<삭제>

<p>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회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p>	<삭제>
<p>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연회에 참석할 이를 우선으로 한다. <신설></p>	<삭제>
<p>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까지만 선출할 수 있다.</p>	<삭제>
<p>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한다.</p>	<삭제>
<p>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p>	<삭제>
<p>⑮ 남·여·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장을 인준한다.</p>	<삭제>
<p>【451】제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p>	<삭제>
<p>① 지방회가 정기 지방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p>	<삭제>
<p>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p>	<삭제>
<p>③ 감독이 제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p>	<삭제>
<p>제 2 절 지방회 분과위원회</p>	<삭제>
<p>【452】제52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지방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분야별 분담, 이와 연관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지방회 안에 둔다. 다만, 각 지방의 형편에 따라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조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신설></p>	<삭제>
<p>【453】제53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삭제>
<p>① 지방회 공천위원회가 개체교회별 배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첩이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위원들을 공천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p>	<삭제>

<p>② 분과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명한다.</p>	<p><삭제></p>
<p>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p>	<p><삭제></p>
<p>[454]제54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전도사, 장로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과정법에 따라 과정고시를 실시한다.</p>	<p><삭제></p>
<p>② 전도사, 장로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품행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회 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p>	<p><삭제></p>
<p>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p>	<p><삭제></p>
<p>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p>	<p><삭제></p>
<p>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사업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사업 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p>	<p><삭제></p>
<p>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p>	<p><삭제></p>
<p>⑦ 교회관리분과위원회 : 개체교회의 건물, 임대차, 비품,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 보고한다.</p>	<p><삭제></p>
<p>⑧ 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8명으로 구성한다. <신설></p>	<p><삭제></p>
<p>⑨재판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8명으로 구성한다. <신설></p>	<p><삭제></p>
<p>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이다.</p>	<p><삭제></p>
<p>⑪ 투표위원회 :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p>	<p><삭제></p>

<p>업무를 분담한다.</p>	
<p>【455】제55조(지방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회가 달 힌 후 각 분과위원회의 분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7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p>① 선교사업위원회</p>	<p><삭제></p>
<p>②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p>	<p><삭제></p>
<p>③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p>	<p><삭제></p>
<p>【456】제56조(상임위원의 보선)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 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위원의 잔 여임기로 한다.</p>	<p><삭제></p>
<p>제 3 절 지방회 실행부위원회</p>	<p><삭제></p>
<p>【457】제57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달 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둔 다.</p>	<p><삭제></p>
<p>【458】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 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삭제></p>
<p>① 감리사, 서기 및 회계</p>	<p><삭제></p>
<p>② 각 부 총무</p>	<p><삭제></p>
<p>③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3명 이내 <신설></p>	<p><삭제></p>
<p>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p>	<p><삭제></p>
<p>⑤ 감사는 직권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 언권을 보유한다.</p>	<p><삭제></p>
<p>【459】제59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p>	<p><삭제></p>
<p>【460】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회 실행부 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p>	<p><삭제></p>
<p>【461】제61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서기) 지방회 실행부 위원회의 서기는 지방회 서기가 겸임한다.</p>	<p><삭제></p>
<p>【462】제62조(지방회 실행부위원의 보선) 지방회 실행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 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삭제></p>
<p>【463】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실행 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p>	<p><삭제></p>
<p>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p>	<p><삭제></p>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삭제>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삭제>
⑤ 지방회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삭제>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⑦ 지방회가 달한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의 심의	<삭제>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삭제>
⑨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조사위원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삭제>
제 4 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삭제>
【464】제64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회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실행부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삭제>
【465】제65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삭제>
① 감리사	<삭제>
②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신설>	<삭제>
【466】제66조(지방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467】제67조(지방회 인사위원회 의장)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삭제>
【468】제68조(지방회 인사위원회 서기) 지방회 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삭제>
【469】제69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회 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삭제>
【470】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삭제>
① 장로와 서리교역자(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수련선교사, 군종사관후보생, 서리목사)의 인사문제	<삭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화합과 친교의 도모	<삭제>
제 5 절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삭제>
【471】제71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실행부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삭제>
【472】제72조(조직) 위원은 6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삭제>
【473】제7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474】제74조(직무)	<삭제>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삭제>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삭제>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삭제>
【475】제75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제 6 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삭제>
【476】제76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실행부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삭제>
【477】제77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삭제>
① 감리사	<삭제>
②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신설>	<삭제>
【478】제7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479】제79조(직무)	<삭제>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삭제>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삭제>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삭제>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삭제>
3.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삭제>
4.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삭제>
5.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를 찬동하는 행위를 한 이	<삭제>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삭제>

<p>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p> <p>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 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p> <p>④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성직윤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p> <p>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p> <p>【480】제80조(위원회 소집)</p> <p>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아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5 장 연 회</p> <p>제 1 절 연 회</p> <p>【487】제87조(연회) 연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입법과 행정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의회로서 미주자치연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입법업무는 연회 안에 미주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미주입법의회는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신설></p> <p>【488】제88조(연회의 조직) 연회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 선교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p> <p>② 전년도 연말까지 지방회 및 연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최근 4년간의 총회 및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p> <p>③ 회원권이 없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년도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p> <p>【489】제89조(특별회원) 연회는 은퇴 목사를 특별회원으로</p>	<p>제 5 장 연 회 <현행></p> <p>제 1 절 연 회 <현행></p> <p>【487】제87조(연회) 연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입법과 행정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의회로서 미주자치연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입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입법의회가 열리는 해당연도의 연회에서 자치법 제정과 개정안을 결의하고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p> <p>【488】제88조(연회의 조직) 연회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 선교회원으로 조직한다. <현행></p> <p>② 전년도 연말까지 지방회 및 연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최근 4년간의 총회 및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로 예우한다.</p> <p>【490】제90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 선교회원, 타교단 타교파 파송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신설></p> <p>【491】제91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감독이 소집한다. <개정></p> <p>① 정기연회는 매년 5월 또는 6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신설></p> <p>② 임시연회는 필요 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한다.</p> <p>【492】제92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 혹은 온라인으로 개최여부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신설></p> <p>【493】제93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p> <p>【494】제94조(연회 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하여 2년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p> <p>① 정·부서기는 연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독과 서기가 날인한 후 이를 연회 본부에 보관하며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p> <p>② 서기는 연회에 관계되는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연회 본부에 보관하며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p> <p>【495】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p> <p>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p> <p>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선교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p>	<p>【490】제90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 선교회원, 타교단 타교파 파송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492】제92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 혹은 온라인으로 개최여부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495】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	---

<p>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회,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신설></p>	
<p>1. 무고하게 2년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p>	<삭제>
<p>2. 2년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파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p>	<삭제>
<p>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p>	<삭제>
<p>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삭제>
<p>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삭제>
<p>6. 정년이 지나도록 은퇴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자격위에서 은퇴자격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회를 결의하면 감독이 퇴회를 명할 수 있다. <신설></p>	<삭제>
<p>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과 선교회원은 일괄적으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신설></p>	<삭제>
<p>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자치법 개정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신설></p>	<삭제>
<p>⑥ 연회는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p>	<삭제>
<p>⑦ 연회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 혹은 지방회에서 위임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8명)와 재판위원회(8명)와 특별재판위원회(8명)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명으로 하고 만장일치 제로 한다. <신설></p>	<삭제>

<p>⑧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되 4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 할 수도 있다. <신설></p>	<p><삭제></p>
<p>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 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p>	<p><삭제></p>
<p>⑩ 연회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 학교의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한다. <신설></p>	<p>⑩ 연회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 학교의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한다. <현행></p>
<p>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p>	<p><삭제></p>
<p>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총회 실행부위원, 은급재단이사, 장정개정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p>	<p>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총회 실행부위원, 은급재단이사, 장정개정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행></p>
<p>1.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p>	<p>1.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현행></p>
<p>2.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을 선출한다. <신설></p>	<p>2.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을 선출한다. <현행></p>
<p>3. 연회는 총회에 참석하여 선출된 입법의회 대표들에게 위임하여 장정개정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신설></p>	<p>3. 연회는 총회에 참석하여 선출된 입법의회 대표들에게 위임하여 장정개정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현행></p>
<p>⑬ 연회는 자치법의 감독선거법에 따라 감독 선거를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장정이 정하고 있는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선출한다. <신설></p>	<p>⑬ 연회는 자치법의 감독선거법에 따라 감독 선거를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장정이 정하고 있는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선출한다. <현행></p>
<p>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p>	<p><삭제></p>
<p>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주유지재단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신설></p>	<p><삭제></p>
<p>2. 교회의 모든 재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p>	<p><삭제></p>
<p>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p>	<p><삭제></p>
<p>⑮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 임식을 거행한다. <신설></p>	<p><삭제></p>
<p>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p>	<p><삭제></p>

<p>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p> <p>⑱ 연회는 미주입법의회 대표를 공천하여 선출한다. <신설></p> <p>⑲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가 된 경우에는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연장 순으로 소집자가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치법에 따라 연회를 소집하여 연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신설></p> <p>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p> <p>【496】제96조(연회 분과위원회)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p> <p>【497】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특별 위원회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지재단이사회 : 조직과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정관에 따른다. <개정> 2. 자치법개정위원회 : 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미주입법의회에, 시행세칙과 연회내규를 심의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3. 목사고시위원회 : 조직과 직무에 대한 세부지침은 과정법에 따른다. <개정> 4. 은급위원회 : 연회의 은급방안을 연구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5. 대외협력위원회 : 대외협력사업을 연구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6. 기관목회위원회 : 군목, 원목, 교목 등의 기관파송 목회자에 대한 수급과 훈련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타교단 타교파 파송 목회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7. 이단 및 동성애 대책위원회 : 이단 및 동성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상정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⑳ 연회는 자치법개정안을 결의 채택한다. <신설></p> <p>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현행></p> <p><삭제></p> <p>【497】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현행></p> <p>① 특별 위원회 <현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지재단이사회 <개정> 2. 자치법개정위원회: 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연회에, 시행세칙과 연회내규를 심의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3. 목사고시위원회 <개정> 4. 은급위원회 <개정> 5. 대외협력위원회 <개정> 6. 기관목회위원회 <개정> 7. 이단 및 동성애 대책위원회 <개정>
--	--

<p>한다. <신설></p> <p>8. 2세 목회위원회 : 2세 교회(EM) 목회자에 대한 수급과 훈련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2세 교회의 개척과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연회 실행위원회에 상정한다. <신설></p> <p>9.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p> <p>② 상임위원회 <신설></p> <p>1.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선교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하며 목사고시위원회를 겸한다. <신설></p> <p>2.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과 선교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신설></p> <p>3. 자치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리하는 자치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한다. <신설></p> <p>4.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연회원 8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4명으로 한다. <신설></p> <p>5. 재판위원회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연회원 8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을 포함하여 조직할 수 있다. <신설></p> <p>6. 특별재판위원회 : 연회재판위원회와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 고발 사건을 재판한다. 연회원 8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을 포함하여 조직할 수 있다. <신설></p> <p>7.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원 8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을 포함하여 조직할 수 있다. <신설></p> <p>8.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자치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p>	<p>8. 2세 목회위원회 <개정></p> <p>9.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현행></p> <p>② 상임위원회 <현행></p> <p>1. 과정고시위원회 <개정></p> <p>2. 자격심사위원회 <개정></p> <p>3. 자치법유권해석위원회: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p> <p>4. 심사위원회 : 위원회는 연회원 10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개정></p> <p>5. 재판위원회 : 위원회는 연회원 10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을 포함하여 조직할 수 있다. <개정></p> <p><삭제></p> <p>7.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원 10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을 포함하여 조직할 수 있다. <개정></p> <p>8. 건의안심사위원회 <개정></p>
--	--

<p>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신설></p> <p>9.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자치법유권해석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p> <p>③ 비상임위원회 <신설></p> <p>1.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p> <p>2.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p> <p>3.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p> <p>4.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p> <p>5.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p> <p>6.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p> <p>7.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p> <p>8.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 시에 회원 수 및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p> <p>9.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p> <p>10. 비상임위원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하고 운용한다. <신설></p> <p>④ 각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p> <p>⑤ 모든 위원회의 소집과 논의와 결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p> <p>【498】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 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p> <p>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p>	<p>9.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자치법유권해석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p> <p>③ 비상임위원회 <현행></p> <p>1.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개정></p> <p>2.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개정></p> <p>3.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개정></p> <p>4.재정위원회 <개정></p> <p>5.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개정></p> <p>6.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개정></p> <p>7.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개정></p> <p>8.투표위원회 <개정></p> <p>9. 운영위원회 <개정></p> <p>10. 비상임위원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하고 운용한다. <현행></p> <p>④ 각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현행></p> <p>⑤ 모든 위원회의 소집과 논의와 결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	--

<p>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p> <p>③ 분과위원회 서기 1명 <신설></p> <p>④ 위원회 대표 각 2명 <신설></p> <p>【499】제99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출) 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당해 연회를 기준하며,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500】제100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든지,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p> <p>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p> <p>【501】제101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개정></p> <p>【502】제102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자격심사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직한다. <신설></p> <p>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③ 연회 서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를 겸임한다.</p> <p>④ 연회 총무와 연회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p> <p>【503】제103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p> <p>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하며,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현행></p> <p><삭제></p> <p>【502】제102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현행></p> <p>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여성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 <개정></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503】제103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 <현행></p> <p>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하며,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현행></p>
--	---

<p>설></p> <p>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삭제></p>
<p>【504】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p><삭제></p>
<p>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 심사</p>	<p><삭제></p>
<p>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p>	<p><삭제></p>
<p>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p>	<p><삭제></p>
<p>④ 연회 및 지방회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p>	<p><삭제></p>
<p>⑤ 연회 및 지방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p>	<p><삭제></p>
<p>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p>	<p><삭제></p>
<p>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p>	<p><삭제></p>
<p>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p>	<p><삭제></p>
<p>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개정></p>	<p><삭제></p>
<p>⑩ 연회 내규 및 시행세칙을 심의 의결하고 소속기관 및 위원회의 정관을 인준한다. <신설></p>	<p><삭제></p>
<p>⑪ 부담금을 장기간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미납할 경우에는 사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처리를 결의할 수 있다.</p>	<p><삭제> <삭제></p>
<p>⑫ 연회 소속기관을 인준한다. <현행></p>	<p><삭제></p>
<p>⑬ 3인 이내의 감독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 방법은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다. <신설></p>	<p><삭제></p>
<p>⑭ 감독이 유고 혹은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15일 이내에 감리사 중 연급 연장자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유고인 경우 감독직무대행을, 궐위된 경우 감독을 보선한다. 보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1. 감독직무대행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가 없을 때는 감독의 자격을 갖춘 감리사를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p>	<p>⑭ 감독이 유고 혹은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 위원 중 연급 연장자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연회실행부 위원회에서 유고인 경우 감독직무대행을, 궐위된 경우 감독을 보선한다. 보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1. 감독직무대행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가 없을 때는 감독의 자격을 갖춘 감리사를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p>

<p>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p> <p>2. 유고되었던 감독이 궐위되면 감독 직무대행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신설></p> <p>3.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연회원 중 감독의 자격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보선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신설></p>	<p>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p> <p>2. 유고되었던 감독이 궐위되면 감독 직무대행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현행></p> <p>3.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연회원 중 감독의 자격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보선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현행></p>
<p>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p>	<p><삭제></p>
<p>【505】제105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p>	<p><삭제></p>
<p>【506】제106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삭제></p>
<p>【507】제10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p>【508】제108조(직무)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삭제></p>
<p>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p>	<p><삭제></p>
<p>② 연회 내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p>	<p><삭제></p>
<p>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p>	<p><삭제></p>
<p>【509】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p>	<p><삭제></p>
<p>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p>	<p><삭제></p>
<p>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 상 착수한다.</p>	<p><삭제></p>
<p>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p>	<p><삭제></p>

<p>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p>	<p><삭제></p>
<p>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p>	<p><삭제></p>
<p>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삭제></p>
<p>[510]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p><삭제></p>
<p>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p>	<p><삭제></p>
<p>[511]제111조(설치) 연회 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p>	<p><삭제></p>
<p>[512]제112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p>	<p><삭제></p>
<p>[513]제113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p>[514]제114조(직무)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p>	<p><삭제></p>
<p>[515]제115조(규정)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p><삭제></p>
<p>제 6 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p>	<p><삭제></p>
<p>[516]제116조(설치) 연회 안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p>	<p><삭제></p>
<p>[517]제117조(조직)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감독이 지명하는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p>	<p><삭제></p>
<p>[518]제118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p>[519]제119조(직무)</p>	<p><삭제></p>
<p>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p>	<p><삭제></p>
<p>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p>	<p><삭제></p>
<p>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p>	<p><삭제></p>

2.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삭제>
3.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 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삭제>
4.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삭제>
5.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 이	<삭제>
6.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삭제>
7.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삭제>
8.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관련된 사안에 협조하는 이	<삭제>
<신설>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 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발 또는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삭제>
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연회에서 부담한다.	<삭제>
【520】제120조(위원회 소집)	<삭제>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삭제>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삭제>
제 7 절 연회 사무완결	제 7 절 연회 사무완결 <현행>
【521】제12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써 사무를 완결한다.	【521】제12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써 사무를 완결한다. <현행>
① 연회에 대하여	<삭제>
1. 이 연회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삭제>
2. 이 연회는 미주유지재단에 편입되었습니까? <신설>	<삭제>
3. 이 연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신원보증을 세웠습니까?	<삭제>
4. 모든 교역자의 품행과 직무상 처리에 무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까?	<삭제>
② 준회원에 대하여	<삭제>
1. 준회원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2. 준회원 1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3.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4. 이미 목사안수 받고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5. 준회원 2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6.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준필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7.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8.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9.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0.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1. 금년에 국외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2.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3.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4.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5.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6.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7. 금년에 신병으로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8.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9.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20.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21.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22. 목사안수를 받고 준회원 과정을 마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③ 정회원에 대하여	<삭제>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2.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3.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4.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5.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6.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7.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8.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9.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0.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11.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삭제>

<p>까?</p> <p>12. 금년에 국외에 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p> <p>13.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연급)</p> <p>14.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p> <p>15.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정직사유)</p> <p>16. 정직에서 복직된 이가 누구입니까?</p> <p>17.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면직사유)</p> <p>18. 정년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p> <p>19.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p> <p>20. 공상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p> <p>21. 자원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p> <p>22. 공상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p> <p>23.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퇴회사유)</p> <p>24.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p> <p>25.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국가/교파/소속의회)</p> <p>26.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국가/교파/소속의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④ 협동회원에 대하여</p> <p>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p> <p>2. 금년에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p> <p>3.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p> <p>4.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p> <p>5.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p> <p>6.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p> <p>7.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p> <p>8.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p> <p>9.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가 누구입니까?</p> <p>10.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면직사유)</p> <p>11.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정직사유)</p> <p>12.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퇴회사유)</p> <p>13. 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p> <p>14.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⑤ 선교회원에 대하여 <신설></p> <p>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p> <p>2. 금년에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p> <p>3.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p>	<p>⑤ 선교회원에 대하여 <현행></p> <p>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p> <p>2. 금년에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p> <p>3.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p>

<p>4.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5.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6.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7.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8.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9.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10.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면직사유) <신설> 11.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정직사유) <신설> 12.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퇴회사유) <신설> 13. 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14.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p>	<p>4.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 5.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현행> 6.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현행> 7.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현행> 8.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현행> 9.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 10.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면직사유) <현행> 11.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정직사유) <현행> 12.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퇴회사유) <현행> 13. 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 14.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현행></p>
<p>⑥ 품행에 대하여 1.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p>	<p><삭제> <삭제> <삭제> <삭제></p>
<p>⑦ 교인상황에 대하여 1. 금년에 원입인 수가 몇 명입니까?(아동 포함) 2. 금년에 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3. 금년에 아동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4. 금년에 유아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5. 금년에 입교한 이가 몇 명입니까? 6. 입교인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p>	<p><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p>
<p>⑧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 1. 연회 회계가 보고하였습니까? 2. 모든 위원이 보고하였습니까? 3. 통계서기가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에 보고하였습니까? 4. 고소가 있습니까? 5. 공소나 상고가 있습니까? 6. 다음 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선출된 교역자 대표</p>	<p><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p>

<p>와 평신도 대표가 누구입니까?</p> <p>7.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지방회가 있습니까?</p> <p>8. 각 지방회 감리사들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누가 선출되었습니까?</p> <p>9. 다음 연회는 어디에서 모입니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6 장 미주입법의회</p> <p>제 1 절 미주입법의회</p> <p>【522】제122조(미주입법의회) 미주입법의회는 미주자치 연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개정></p> <p>【523】제123조(미주입법의회의 조직) 미주입법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직권상 회원 : 감독, 총무, 연회 서기, 감리사, 자치법 개정위원, 자격심사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p> <p>② 선출직 회원은 연회에 등록된 정회원 중 20명, 안수 받은 장로10명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연회에서 정한다. <개정></p> <p>③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미주입법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신설></p> <p>④ 미주입법의회 회원으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미주입법의회 회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신설></p> <p>⑤ 연회는 미주입법의회 회원의 선출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p> <p>【524】제124조(미주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미주입법의회 회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p> <p>【525】제125조(미주입법의회의 구분) 미주입법의회는 정기 입법의회와 임시 입법의회로 구분한다. <신설></p> <p>【526】제126조(미주입법의회 회원의 등록) 미주입법의회 회원은 입법의회 개최 전에 연회본부에서 정하는 날까지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p> <p>【527】제127조(미주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미주입법의</p>	<p>제 6 장 미주입법의회<522~534 까지 일괄삭제></p>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신설>

【528】제128조(미주입법회의의 소집) 미주입법회의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신설>

- ① 정기 미주입법회의는 총회의 입법회의가 소집되는 연도의 연회 개최 전에 감독이 소집한다. <개정>
- ② 임시 미주입법회의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이 소집한다. <신설>
- ③ 감독은 미주입법회의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미주입법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연회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통보할 수도 있다. <신설>
- 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이 정기 미주입법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 ⑤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529】제129조(미주입법회의 의장) 미주입법회의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 유고 시에는 입법회의 회원 중에서 감독이 지명하는 감리사가,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회의 회원인 감리사 중에서 연급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530】제130조(미주입법회의 서기 선출) 미주입법회의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신설>

- ① 미주입법회의는 정·부서기를 선출한다. <신설>
- ② 정·부서기는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31】제131조(미주입법회의의 정원 정족수) 미주입법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신설>

【532】제13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미주입법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신설>

- ① 자치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개정안 <신설>
- ② 미주입법회의에서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개정안 <신설>

【533】제133조(미주입법회의의 직무) 미주입법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 ① 자치법의 제정, 폐지 및 개정 <신설>

<p>②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신설></p> <p>[534]제134조(미주입법의회 의결 정족수) 미주입법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p> <p>제 2 절 자치법개정위원회</p> <p>[535]제135조(자치법개정위원회)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자치법 개정안, 시행세칙, 연회내규 등을 심의하여 자치법 개정안은 미주입법의회에, 시행세칙과 연회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각각 발의한다. <개정></p> <p>①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연회에서 공천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p> <p>② 자치법개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자치법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감독이 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p> <p>③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된 시행세칙 및 연회내규 개정안은 연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다. <신설></p> <p>④ 감독은 의결된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공포한다. 단, 30일 이내에 감독이 공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개정위원장이 공포한다. <현행></p> <p>⑤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따른다.(현행)</p> <p>제 7 장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등</p> <p>[536]제136조(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지방회, 연회 및 입법의회는 지방 및 연회 부담금을 전년도 연말까지 완납하고 최근 4년간의 본부 및 은급 부담금을 전년도 연말까지 납부한 구역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총회 관련 선출직과 감리사와 감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든 부담금을 완납한 구역의 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완납이라 함은 과거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정></p> <p>② 지방회 및 연회의 개회 성원은 재적 과반이 등록되면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개정></p>	<p>제 2 절 자치법개정위원회</p> <p>[535]제135조(자치법개정위원회)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자치법 개정안, 시행세칙, 연회내규 등을 심의하여 자치법 개정안은 연회에, 시행세칙과 연회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각각 발의한다. <개정></p> <p>①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출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p> <p>② 자치법개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자치법 개정안은 연회 개최 10일 전까지 감독이 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현행></p> <p>③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된 시행세칙 및 연회내규 개정안은 연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다. <현행></p> <p>④ 감독은 의결된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공포한다. 단, 30일 이내에 감독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개정위원장이 공포한다. <현행></p> <p>⑤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따른다. <현행></p> <p>⑥ 현장발의는 재석회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p> <p>제 7 장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등 <현행></p> <p>[536]제136조(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현행></p> <p>① 지방회, 연회는 지방 및 연회 부담금을 전년도 연말까지 완납하고 최근 4년간의 본부 및 은급부담금을 전년도 연말까지 납부한 구역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총회 관련 선출직과 감리사와 감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든 부담금을 완납한 구역의 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완납이라 함은 과거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개정></p> <p>② 지방회 및 연회의 개회 성원은 재적 과반이 등록되면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현행></p>
--	--

<p>③ 지방회 및 연회의 의결은 특별히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의결 당시 회의장에 출석해 있는 재석회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p> <p>④ 미주입법회의의 개회 성원은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출석의 과반으로 의결한다. <개정></p> <p>부 칙 (2021. 1. 25)</p> <p>【53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538】제2조(경과조치) 연회표준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제30회 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다.</p>	<p>③ 지방회 및 연회의 의결은 특별히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의결 당시 회의장에 출석해 있는 재석회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p> <p><삭제></p> <p>부 칙 (2021. 1. 25)</p> <p>【53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538】제2조(경과조치) 연회표준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32회 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p> <p>【539】제3조(경과조치) 제29회 연회에서 임명된 입법대표와 특별재판위원을 제외하고 감리사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임기는 제31회 연회까지로 한다.<신설></p>
<p>제 5 편 재판법</p> <p>제 1 장 일반 재판법</p> <p>제 1 절 총 칙</p> <p>【601】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자치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신설></p> <p>【602】제2조(재판의 대상자)</p> <p>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p> <p>② 교역자와 교인은 자치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신설></p> <p>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p> <p>【603】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p> <p>②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p> <p>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신설></p>	<p><제 5편 재판법 전체 삭제></p>

<p>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p> <p>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p> <p>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p> <p>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p> <p>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p> <p>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p> <p>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p> <p>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p> <p>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p> <p>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p> <p>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p> <p>⑮ 감독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p> <p>⑯ 지방회, 연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p> <p>⑰ 음주,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p> <p>【6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p> <p>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p> <p>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p> <p>④ 감독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p> <p>⑤ 값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p> <p>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p> <p>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때</p> <p>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p> <p>【605】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	--

- ① 별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 ⑥ 총회재판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미주자치연회와 소속 지방회에서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정지한다. <신설>

【606】제6조(별칙의 효력) 별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607】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 장로와 서리담당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 : 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②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 : 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신설>
- ③ 감독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

한 재판 : 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 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감독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608】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609】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 : 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⑤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610】제10조(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611】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612】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

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소 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 고소를 취하한 범과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613】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 3 절 심 사

【614】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지방회 심사위원회는 지방회 회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②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신설>

④ 연회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신설>

⑤ 연회 심사위원은 연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615】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616】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그 심사를 연회심사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②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감독인 경우에는 총회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신설>

④ 지방심사위원회가 연회로 이관한 경우 또는 교역자(연회 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장로에 대한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제척 등의 이유로 심사가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연회실
행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출하여 재구성할 수 있
다. <신설>

【617】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
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618】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
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
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619】제19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
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
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620】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
서를 작성한다. 다만, 심사위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
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
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는 결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621】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
중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
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분을 고

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22】제22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문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623】제23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624】제24조(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25】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626】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627】제27조(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는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준한다.

【628】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소심 재판위

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 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제3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 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제 4 절 재 판

【629】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연회에 연회 재판위원회와 연회 특별재판위원회를 둔다. <신설>

【630】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② 연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연회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연회 재판위원은 4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4명 중에서 대치한다. <신설>

④ 연회 특별재판위원은 4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4명 중에서 대치한다. <신설>

- ⑤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신설>
- ⑥ 각급 재판위원은 연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 ⑦ 감독은 필요에 따라 연회 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연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631】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

-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제척, 기피 등의 사유로 재판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재판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 ② 재판위원 교체 시에는 가급적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632】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633】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 ① 1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신설>
- ② 2심 재판은 연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신설>

【634】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재판위원의 재적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 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임회하여야 한다.
-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재판위원회는 판결서에 제6조(벌칙의 효력)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635】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자치법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예외로 한다.

【636】제36조(증인의 채택)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교인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수락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637】제37조(증인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638】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 일시를 정하고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재판 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 장소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639】제39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640】제40조(결석재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결석재판을 진행한다.

【641】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
- 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 ③ 사실심리 :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
- ④ 변호인의 변론
- ⑤ 증인 채택(원고측, 피고측으로 구분하여)
- ⑥ 변호인의 최후 변론
- ⑦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최후 진술
- ⑧ 판결

【642】제42조(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재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재판 절차나 진행에 있어서 위법적 사항이 있을 때

【643】제43조(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처리) 재판위원장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을 정회하거나 연기하여 이의신청 요소를 시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재판기록에 기재한다.

【644】제44조(증거조사) 재판위원장은 제출된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장, 고소인, 변호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소인에게는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45】제45조(증인신문) 증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신문한다.

- ① 재판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구두로 증언하게 한다. 특별한 경우 서면답변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증인들은 증인신문 때에 서로 동석할 수 없다.
- ③ 재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소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646】제46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재판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재판위원회에서, 그 외에는 증인을 신청한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부담한다.

【647】제47조(재판정의 질서유지)

-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재판에 관계된 이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

릴 수 있다.

② 재판위원회는 제1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648】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④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 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 <신설>

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649】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통고한다.

【650】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651】제51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652】제52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위원회는 재

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653】제53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재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절 상 소

【654】제54조(상소권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

【655】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 ② 신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656】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657】제57조(상소장 접수 처리)

- ① 1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자는 사건 관계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1항의 서류 일체를 해당 재판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658】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①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1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659】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만장일치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설>

제 6 절 재 심

【660】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661】제61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판결을 한 다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을 변경한다.

【662】제62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

을 청구하지 못한다.

【663】제63조(재심판결의 상소)

- ①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 ② 재심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664】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7 절 복 권

【665】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당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666】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667】제67조(가중 처벌) 교인이나 교역자가 복권된 후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벌칙에 대해 2배로 가중 처벌 한다.

부 칙 (2021. 1. 25)

【66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669】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미주자치연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신설>

【670】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 :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 :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 :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671】제3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 2 절 재판기관

【672】제4조(재판의 심급) 2심제로 한다. <신설>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 회원, 지방회 회원, 연회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연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연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행정재판위원회를 대신하여 연회재판위원회에서 1심 재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 3 절 당사자

【673】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회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

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674】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675】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 4 절 재 판

【676】제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행정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연회에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 ② 연회에 연회 특별재판위원회(일반 재판법에 의한 연회 특별재판위원회를 겸함)를 둔다. <신설>

【677】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8명으로 구성하고, 4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4명 중에서 대치한다. <신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신설>

③ 행정재판위원은 미주자치연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④ 감독은 연회 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678】제10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행정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제척, 기피 등의 사유로 재판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② 재판위원 교체 시에는 가급적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679】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행정재판위원은 다음 각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 ① 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 ②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③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경우
- ④ 재판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⑤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의회결의 참여는 제외)

【680】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재판위원이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각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할 수 있다.

【681】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p>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p> <p>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682】제14조(조정신청기간)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683】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행정재판의 당사자는 제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자치법에 익숙한 감리교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p> <p>② 소송대리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송대리인은 예외로 한다.</p> <p>【684】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p> <p>① 행정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장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및 주소 2. 피고인 의회(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또는 의회의 장의 이름 및 의회의 주소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결, 처분의 내용 4. 의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을 한 의회의 장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p>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원고는 소장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685】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p> <p>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연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p>	
---	--

의회가 관할 연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신설>

【686】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감독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감독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687】제19조(답변서의 제출)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즉시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688】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위원장은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이후의 재판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689】제21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690】제22조(소의 취하)

① 행정재판청구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판청구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91】제23조(쌍방불출석)

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행정재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지정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이상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

【692】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의회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693】제25조(재판의 공개)

① 1심 재판은 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 기타 공개할 경우 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상소심 심리는 구두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94】제26조(증거조사)

①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물건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95】제27조(증인의 자격) 증인은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696】제28조(증인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697】제29조(증인신문)

- ① 증인신문은 재판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 ② 재판정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정 외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을 신청한 측이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반대당사자가 신문한다.
- ④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문 후에 신문하여야 하나 필요시에는 먼저 또는 신문 중간에도 할 수 있다.
- ⑤ 필요 시에는 당사자 및 증인 간의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은 재판정에서만 할 수 있다.

【698】제30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증인신청자가 부담하되 증인신청 시에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699】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700】제32조(판결)

-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 ④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701】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을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702】제34조(판결의 통고)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와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에게 통고한다.

【703】제35조(판결의 확정)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704】제36조(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재판위원회는 제32조(판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의회의 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회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705】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행정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706】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707】제39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당사자는 재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절 상 소

【708】제40조(상소권자)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

여 상소할 수 없다.

【709】제41조(상소의 이유)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법규위반의 판결이 있을 때
-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 ③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 ④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부당할 때
- ⑤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710】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1】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12】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 ①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인에게 상소기록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납부명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장을 각하한다.

【713】제45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행정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714】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
- 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
- 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 ⑤ 이 경우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p>⑥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만장일치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설></p> <p>제 6 절 재 심</p> <p>【715】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716】제48조(재심청구기간)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p> <p>【717】제49조(재심의 재판)</p> <p>①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p> <p>②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원판결을 변경한다.</p> <p>【718】제50조(재심청구의 취하)</p> <p>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p> <p>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719】제51조(재심판결의 상소)</p> <p>①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p> <p>② 재심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p> <p>【720】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관할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p> <p>부 칙 (2021. 1. 25)</p> <p>【72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6 편 감독 선거법</p> <p>제 1 장 총 칙</p> <p>【801】제1조(목적) 감독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미주자치연회의 감독 선거를 법에 따라 신앙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p>	<p>제 6 편 감독 선거법 <현행></p> <p>제 1 장 총 칙 <현행></p> <p>【801】제1조(목적) 감독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미주자치연회의 감독 선거를 법에 따라 신앙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p>

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02】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 선거라 함은 자치법의 조직과 행정법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선거를 말한다. <신설>

【803】제3조(감독 선거) 감독 선거는 정기총회가 있는 연도에 개최되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연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는 감독선거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개정>

- ① 감독의 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 ③ 감독당선자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신설>
- ④ 취임 전 감독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일 때, 혹은 감독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다만, 재선거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신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8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미주자치연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신설>

- ① 선관위는 연회에 등록된 4명의 연회원으로 구성하며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를 주관한다. <신설>
- ② 선관위는 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력한다. <신설>

【805】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연회는 연회에 등록된 연회원 중에서 4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연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신설>
-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회부터 연회까지로 한다. <신설>
- ③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

<삭제>

【803】제3조(감독 선거) 감독 선거는 정기총회가 있는 연도에 개최되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연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는 감독선거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현행>

- ① 감독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만 후보 등록 및 연회에서의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현행>
- ③ 감독당선자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현행>
- ④ 취임 전 감독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일 때, 혹은 감독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다만, 재선거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현행>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현행>

【8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미주자치연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현행>

- ① 선관위는 연회에 등록된 4명의 연회원으로 구성하며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를 주관한다. <현행>
- ② 선관위는 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력한다. <현행>

【805】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현행>

- ① 연회는 연회에 등록된 연회원 중에서 4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연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현행>
-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회부터 연회까지로 한다. <현행>
- ③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p>한다. <신설></p> <p>④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연회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p> <p>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p> <p>【806】제6조(관장사항 및 직무) <개정></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3.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의 자격심의 및 경선의지 확인 <신설> 4. 투표 및 개표 장소 투표 방법의 결정 및 관리 <신설> 5.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6. 투표 및 개표의 관리 7.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8.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9.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p>②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와 협력하여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p> <p>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p> <p>④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된 3인의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추천을 취소한다. <개정></p> <p>【807】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신설></p> <p>① 감독은 선관위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결위 혹은 유고 시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위원을 보선하고 감독이 선관위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보선한다. <개정></p> <p>②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기 1인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p>	<p>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806】제6조(관장사항 및 직무) <현행></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와 협력하여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현행></p> <p>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현행></p> <p><삭제></p> <p>【807】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현행></p> <p>① 감독은 선관위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결위 혹은 유고 시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위원을 보선하고 감독이 선관위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보선한다. <현행></p> <p>②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기 1인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p>
--	--

<p>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p> <p>【808】제8조(의결 정족수) <신설></p> <p>① 선관위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은 그 위원의 고의적 불출석이 확인되면 바로 직무를 정지하고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신설></p> <p>② 선관위가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후보자 중, 결격사유로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p> <p>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809】제9조(선거 시행의 공고)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과 선거의 시행세칙을 감독선거가 있는 연회 15일 이전에 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p> <p>【810】제10조(피선거권) 감독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p> <p>① 조직과 행정법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춘 이 <신설></p> <p>②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 과거에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구역에 소속한 이 <신설></p> <p>③ 연회의 표준정관을 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한 구역에 소속한 이 <신설></p> <p>④ 교회의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이 <신설></p> <p>⑤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혹은 미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 혹은 미화 \$1000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신설></p> <p>1. 선거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한 이 <신설></p> <p>2. 선거일 기준으로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한 이 <신설></p> <p>⑥ 현직 감리사가 아닌 이 <신설></p>	<p>무를 담당하게 한다. <현행></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현행></p> <p>【809】제9조(선거 시행의 공고)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과 선거의 시행세칙을 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p> <p>【810】제10조(피선거권) 감독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현행></p> <p>① 조직과 행정법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춘 이 <현행></p> <p>②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 과거에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구역에 소속한 이 <현행></p> <p>③ 연회의 표준정관을 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한 구역에 소속한 이 <현행></p> <p>④ 교회의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이 <현행></p> <p>⑤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혹은 미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 혹은 미화 \$1000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현행></p> <p>1. 선거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한 이 <현행></p> <p>2. 선거일 기준으로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한 이 <현행></p>
--	---

<p>⑦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신설> ⑧ 건강진단서 소견 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신설> ⑨ 거주국가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신설> ⑩ 직무수행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 <신설></p>	<p>⑥ 현직 감리사가 아닌 이 <현행> ⑦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현행> ⑧ 건강진단서 소견 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현행> ⑨ 거주국가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현행> ⑩ 직무수행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 <현행></p>
<p>【811】제11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③ 연회의 표준정관을 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한 교회의 회원 <신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p>	<p>【811】제11조(선거권) <현행>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현행>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행> ③ 연회의 표준정관을 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한 교회의 회원 <현행> <삭제> <삭제></p>
<p>【812】제12조(선거인 명부) 선관위는 선거가 있는 해의 각 지방회로부터 연회평신도대표의 명단을 받아 연회 개최 7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정리하여 연회 홈페이지에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연회 개최 시까지 확정한다. <신설></p>	<p>【812】제12조(선거인 명부) 선관위는 선거가 있는 해의 각 지방회로부터 연회평신도대표의 명단을 받아 연회 개최 7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정리하여 연회 홈페이지에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연회 개최 시까지 확정한다. <현행></p>
<p>【813】제13조(후보자 자격 심의) ① 선관위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천거된 3인 이내의 후보자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자격자로 확인되면 경선의지를 확인한다. <신설> ② 경선의지가 확인된 최종 후보자들을 연회에 발표한다. <신설> ③ 확인된 후보자들은 전 연회원들에게 7분간의 정책발표를 한다. <신설></p>	<p><삭제> <삭제> <삭제> <삭제></p>

제 4 장 투표와 개표	<삭제>
【814】제14조(투표소)	<삭제>
① 선관위는 연회 장소에 투표소를 정하고 투표함을 설치한다. <신설>	<삭제>
② 선관위는 투표를 개시하기 전 선거인단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신설>	<삭제>
③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경우 선관위가 투표 장소 선정 방법을 정한다. <신설>	<삭제>
【814】제15조(투표용지)	<삭제>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 선거라고 기재한다. <신설>	<삭제>
②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삭제>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삭제>
④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경우 선관위가 투표 방법을 정한다. <신설>	<삭제>
【816】제16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후보들의 정책발표 직후로 한다. <신설>	<삭제>
【817】제17조(투표안내) 선관위는 후보들의 정책발표 직후 선거권자를 투표소로 안내한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삭제>
【818】제18조(개표)	<삭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삭제>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삭제>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삭제>
【819】제19조(무효표)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삭제>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삭제>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삭제>
3. 복수 후보자의 이름을 쓴 것 <신설>	<삭제>
4. 후보자 이름 외에 다른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신설>	<삭제>
5.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경우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선거인의 표 <신설>	<삭제>
6. 고의로 선거를 꾀방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권으로	<삭제>

<p>처리한다. <신설></p> <p>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p> <p>【820】제20조(투표와 개표의 관리)</p> <p>① 투표와 개표는 연회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p> <p>②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후보자는 투표소에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p> <p>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p> <p>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 5 장 보 칙</p> <p>【821】 제21조(보궐선거)</p> <p>① 감독이 유고 시에는 15일 이내에 감리사 중 연급연장자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사회하여 감독을 지낸 이 중에서, 감독을 지낸 이가 없는 경우 감독의 자격에 해당하는 감리사를 지낸 이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의 임기는 감독의 복귀까지이며 직무대행의 임기 중 감독이 궐위되면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궐위 된 감독의 잔여임기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②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비롯하여 감독이 궐위 시에는 15일 이내에 감리사 중 연급 연장자가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궐위 된 감독의 잔여임기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제 5 장 보 칙 <현행></p> <p>【821】 제21조(보궐선거) <현행></p> <p>① 감독이 유고 시에는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연장자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사회하여 감독을 지낸 이 중에서, 감독을 지낸 이가 없는 경우 감독의 자격에 해당하는 감리사를 지낸 이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의 임기는 감독의 복귀까지이며 직무대행의 임기 중 감독이 궐위되면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궐위 된 감독의 잔여임기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②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비롯하여 감독이 궐위 시에는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연장자가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궐위 된 감독의 잔여임기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822】제22조(우편투표)</p> <p>①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의 경우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으</p>	<p>【822】제22조(우편투표)</p> <p>①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의 경우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으</p>

<p>로 실시할 수도 있다. <신설></p> <p>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p> <p>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p> <p>【823】제23조(재정)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연회가 부담한다. <신설></p> <p>부 칙 (2021. 1. 25)</p> <p>【8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825】제2조(경과조치) 연회표준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제30회 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다.</p>	<p>로 실시할 수도 있다. <현행></p> <p>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현행></p> <p>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현행></p> <p>【823】제23조(재정)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연회가 부담한다. <현행></p> <p>부 칙 (2021. 1. 25)</p> <p>【8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825】제2조(경과조치) 연회표준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32회 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p>
<p>제 7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p> <p>제 1 장 총 칙</p> <p>【901】제1조(목적) 이 법은 미주자치연회의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p> <p>제 2 장 연회 경계</p> <p>【902】제2조(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하며 그 외 중남미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는 감리회의 선교연회, 혹은 타연회의 지방회,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 단, 2015년 제23회 미주특별연회 당시 캐나다중앙지방에 소속되었던 교회들만은 예외로 한다.</p> <p>②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 있는 지방회는 남가주, 미서남부, 미서북부, 미중남부, 미중북부, 미동북부, 미동부, 미동남부, 캐나다서부, 캐나다동부, 중남미지방회 등 11개 지방회이다. <개정></p> <p>제 3 장 지방회 경계 <신설></p> <p>【903】제3조(지방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지방회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신설></p>	<p>제 7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현행></p> <p>제 1 장 총 칙 <현행></p> <p>【901】제1조(목적) 이 법은 미주자치연회의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p> <p>제 2 장 연회 경계 <현행></p> <p>【902】제2조(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현행></p> <p>①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하며 그 외 중남미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는 감리회의 선교연회, 혹은 타연회의 지방회,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 단, 2015년 제23회 미주특별연회 당시 캐나다중앙지방에 소속되었던 교회들만은 예외로 한다. <현행></p> <p>②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 있는 지방회는 남가주, 미서남부, 미서북부, 미중남부, 미중북부, 미동북부, 미동부, 미동남부, 캐나다서부, 캐나다동부, 중남미지방회 등 11개 지방회이다. <현행></p> <p>제 3 장 지방회 경계 <현행></p> <p>【903】제3조(지방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지방회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현행></p>

<p>1. 남가주지방 : California주 남부로 10번 프리웨이 110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 15번 프리웨이의 California주 경계까지의 남부지역으로 한다. <신설></p> <p>2. 미서남부지방 : California주의 중부로 북쪽 경계는 Monterey와 Bridgeport를 잇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남쪽지역, 남쪽 경계는 10번 Freeway, 110번 Freeway, 210번 Freeway, 15번 Freeway의 California주 경계까지를 기준으로 그 북쪽지역과 Nevada, Arizona, Utah, Hawaii주를 포함한다. <신설></p> <p>3. 미서북부지방 : California주의 Monterey와 Bridgeport를 잇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북쪽 지역과 Alaska, Washington, Oregon, Montana, Idaho, Wyoming주를 포함한다. <신설></p> <p>4. 미중남부지방 : Colorado, New Mexico, Texas, Oklahoma, Kansas, Arkansas, Louisiana주를 포함한다. <신설></p> <p>5. 미중북부지방 : Ohio, Indiana, Michigan, Wisconsin, Illinois, Missouri, Nebraska, Iowa, North Dakota, South Dakota, Minnesota, Tennessee, Kentucky주를 포함한다. <신설></p> <p>6. 미동북부지방 : Maine, Vermont, New Hampshire, Massachusetts, Connecticut, Rhode Island, New York주를 포함한다. <신설></p> <p>7. 미동부지방 : New Jersey, Pennsylvania, Maryland, Delaware, West Virginia, Virginia주를 포함한다. <신설></p> <p>8. 미동남부지방 :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Alabama, Georgia, Mississippi, Florida주를 포함한다. <신설></p> <p>9. 캐나다서부지방 : 캐나다의 서부지역을 포함한다. <신설></p> <p>10. 캐나다동부지방 : 캐나다의 동부지역을 포함한다. <신설></p> <p>11. 중남미지방 :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다. <신설></p> <p>【904】제4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신설></p>	<p>1. 남가주지방 : California주 남부로 10번 프리웨이 110번 프리웨이 210번 프리웨이, 15번 프리웨이의 California주 경계까지의 남부지역으로 한다. <현행></p> <p>2. 미서남부지방 : California주의 중부로 북쪽 경계는 Monterey와 Bridgeport를 잇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남쪽지역, 남쪽 경계는 10번 Freeway, 110번 Freeway, 210번 Freeway, 15번 Freeway의 California주 경계까지를 기준으로 그 북쪽지역과 Nevada, Arizona, Utah, Hawaii주를 포함한다. <현행></p> <p>3. 미서북부지방 : California주의 Monterey와 Bridgeport를 잇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북쪽 지역과 Alaska, Washington, Oregon, Montana, Idaho, Wyoming주를 포함한다. <현행></p> <p>4. 미중남부지방 : Colorado, New Mexico, Texas, Oklahoma, Kansas, Arkansas, Louisiana주를 포함한다. <현행></p> <p>5. 미중북부지방 : Ohio, Indiana, Michigan, Wisconsin, Illinois, Missouri, Nebraska, Iowa, North Dakota, South Dakota, Minnesota, Tennessee, Kentucky주를 포함한다. <현행></p> <p>6. 미동북부지방 : Maine, Vermont, New Hampshire, Massachusetts, Connecticut, Rhode Island, New York주를 포함한다. <현행></p> <p>7. 미동부지방 : New Jersey, Pennsylvania, Maryland, Delaware, West Virginia, Virginia주를 포함한다. <현행></p> <p>8. 미동남부지방 :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Alabama, Georgia, Mississippi, Florida주를 포함한다. <현행></p> <p>9. 캐나다서부지방 : 캐나다의 서부지역을 포함한다. <현행></p> <p>10. 캐나다동부지방 : 캐나다의 동부지역을 포함한다. <현행></p> <p>11. 중남미지방 :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다. <현행></p> <p>【904】제4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현행></p>
--	--

<p>【905】제5조(지방회 통합과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회 통합 및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부 칙 (2021. 1. 25)</p> <p>【90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907】제2조(경과조치) 11개 지방으로 정해진 새로운 지방경계는 2021년에 개최되는 제29회 미주자치연회부터 시행하며 그때까지는 기존 19개 지방으로 구성한다.</p> <p>제 8 편 과정법</p> <p>제 1 장 집사과정</p> <p>【1001】제1조(집사과정) 신천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신약개요② 구약개요③ 감리교회의 역사④ 집사의 직무 <p>제 2 장 권사과정</p> <p>【1002】제2조(권사과정)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과정고시 과목<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약(복음서)2. 구약(율법서)3. 미주자치연회의 교리와 의회제도 <신설>4. 권사의 직무② 지방회 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③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④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p>【905】제5조(지방회 통합과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회 통합 및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현행></p> <p>부 칙 (2021. 1. 25)</p> <p>【90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삭제></p> <p><1장~3장까지 전체 삭제></p>
---	---

위임할 수도 있다.

⑤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 신학계열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제 3 장 장로 고시 및 진급 과정

【1003】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천장로 고시과정

1. 신·구약 개론
2. 자치법 <신설>
3. 감리교회사
4. 설교학
5. 임원지침

② 이명장로 고시과정(감리회 인정 타 교파 출신)

1. 자치법 <신설>
2. 감리교회사
3. 감리교신학
4. 임원지침

③ 진급 과정

1년급 :

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2년급 :

1. 구약(성문집)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④ 지방회는 장로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 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⑤ 고시문제는 위원회에서 공동출제하여 지방회 과정고시위원회에 위임한다.

⑥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4년제)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 과정 중 자치법만 고시한다.<신설>

제 4 장 교역자 진급 과정

【1004】제4조(진급 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 미군군목후보생, 수련선교사, 현지어 목회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신설>

- ① 신학대학원(M.Div., MAT,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 ② 신학대학원(M.Div., MAT,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로서 개체교회 또는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은 환율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 ③ 미군군목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신설>
- ④ 현지어 목회자는 파송 받을 현지의 언어로 교육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로서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M. Div 과정 중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미주자치연회 개체교회에서 1년 이상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학위 취득 후 첫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준회원으로 허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지 못해도 학위취득 후 첫 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으며 추후 목사고시 합격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 ⑤ 현지어 목회자로서 이미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마친 이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미주자치연회 개체교회에서 1년 이상 서리로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준회원으로 허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지 못해도 연회에서 과정과 자격을 필한 후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으며 추후 목사고시 합격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 ⑥ 현지어 목회자로서 준회원으로 안수를 받은 후에도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진급을 계속하여 정회원으로 허입하여야 한다. <개정>
- ⑦ 현지어 목회자로서 개체교회 담임자의 경우는 목사

제 4 장 교역자 진급 과정 <현행>

【1004】제4조(진급 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 미군군목후보생, 수련선교사, 현지어 목회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현행>

- ① 신학대학원(M.Div., MAT,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현행>
- ② 신학대학원(M.Div., MAT,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로서 개체교회 또는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은 환율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현행>
- ③ 미군군목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현행>
- ④ 현지어 목회자는 파송 받을 현지의 언어로 교육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로서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M. Div 과정 중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미주자치연회 개체교회에서 1년 이상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학위 취득 후 첫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준회원으로 허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지 못해도 학위취득 후 첫 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으며 추후 목사고시 합격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 ⑤ 현지어 목회자로서 이미 미주자치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마친 이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미주자치연회 개체교회에서 1년 이상 서리로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준회원으로 허입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지 못해도 연회에서 과정과 자격을 필한 후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으며 추후 목사고시 합격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현행>
- ⑥ 현지어 목회자로서 준회원으로 안수를 받은 후에도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진급을 계속하여 정회원으로 허입하여야 한다. <현행>
- ⑦ 현지어 목회자로서 개체교회 담임자의 경우는 목사

고시를 면제한다. 현지어 목회자로서 수련목회자에 해당되는 이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교회 담임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은 환율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⑧ 개체교회 담임자로서 과정을 시작하였더라도 안수받기 전에 부담임자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목사고시를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교역자는 파송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신설>

⑩ 서리 및 준회원의 진급은 전임목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1005】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과정

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

② 1년급과정

1. 시험-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

③ 2년급과정

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1006】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련목회자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

고시를 면제한다. 현지어 목회자로서 수련목회자에 해당되는 이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교회 담임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은 환율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현행>

⑧ 개체교회 담임자로서 과정을 시작하였더라도 안수받기 전에 부담임자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목사고시를 합격하여야 한다. <현행>

⑨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교역자는 파송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현행>

⑩ 서리 및 준회원의 진급은 전임목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제 5조 전체 삭제>

【1006】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행>

① 수련목회자는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

<p>여 할 수 있다.</p>	<p>여 할 수 있다. <현행></p> <p>부 칙 (2021. 1. 25)</p> <p>【100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